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67호 2010. 2. 9(화)

# 포항시보

- 시장지시사항..... 2
- ◀ 입법예고 ▶
-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0-181호) ..... 5
- ◀ 공 고 ▶
- 옥외광고업체 직권말소 공고(제2010-163호) ..... 8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공고(제2010-167호) ..... 12
-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남구 공고 제2010-21호) ..... 15
- 공 인 공 고(제2010-176호) ..... 19

회									
람									

시장 지시(훈시)사항

- 2010. 2. 8(월) 확대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물 고품격화를 위해 홍보담당부서의 검토 등을추진 바람.</l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시정 홍보물의 공통성 디자인 결여 등으로 인해 시가 평가저하 되는 일이 없도록 내용, 디자인 등을 홍보담당관실의 자문 거쳐 제작·배부되도록 검토 및 추진</li> </ul> <li>○ 향후 닥쳐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토록 필요한 시책개발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l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X노선 확정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의 환경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각 부서별로 환경변화에 맞는 시책개발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li> </ul> <li>○ 간부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국비확보에 최선 경주</l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2만 포항시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선 간부공무원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함</li> <li>- 간부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직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독려하고, 전문가 초빙을 통한 교육 등을 통하여 창의적인 시책개발, 국비확보 및 민자확보 할 수 있도록 애써주기 바람</li> <li>- 앞으로 업무를(창의적 아이디어 및 국비확보 등) 통해 평가·인사할 것이며, 업무에 성과 내야만 인사가 잘 받을 것임. 간부공무원들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직원들을 평가·평정해야 하겠음.</li> </ul> </ul>	<p>전부서 (홍보담당관)</p> <p>기획예산과</p> <p>전부서</p>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2. 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년도 예산은 지금부터 챙겨주시기 바람.</li>   <li>○ 공무원 사기양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람</li> </ul> </li>   <li>○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 및 감축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실한 에너지 10% 감축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수립 및 수합 조치로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구축하고,</li> <li>- 아울러 이행·평가 추진으로 에너지 절약이 확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li> </ul> </li>   <li>○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사업 추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이지만 지난 공공근로사업의 안일한 추진으로 인해 시민들로 부터 불신이 있어왔음. 이제 변화가 필요함.</li> <li>- 향후 공공·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확실한 목표설정 및 계획수립을 통해 국가사업에 대한 인식변화 도모 및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li> </ul> </li> </ul>	<p>전부서</p> <p>전부서 (자치행정과)</p> <p>녹색성장팀</p> <p>경제노동과</p>

부시장 훈시사항

- 2010. 2. 8(월) 확대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 연휴기간 시정보도가 잘 되도록 보도자료 제공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li>   <li>○ 귀성객 손님맞이 및 공직기강확립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정비,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귀성객 맞이 현수막 게첨, 비상근무 및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li> <li>- 특히, 음주운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li> </ul> </li>   <li>○ 적십자회비 회원모집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li>   <li>○ 해빙기에 대비하여 취약지역 등 점검 철저</li>   <li>○ 산불예방 철저.</li> </ul>	<p>전부서 (홍보담당관)</p> <p>전부서 (자치행정과) (감사담당관)</p> <p>자치행정과 읍면동</p> <p>재난안전과</p> <p>도시녹지과</p>

# 입법예고

포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 2. 9.

포항시 공고 제2010 - 181호

##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건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여 심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운영규정 신설(안 제8조2)

-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3. 관련법령 :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개정 2009.4.1〉

1. 이 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한다)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4.1〉
  -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개정 2009.4.1〉
  -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09.4.1〉
  -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3.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건축과 주택담당 :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전화 270-3583, FAX 270-3580, E-mail: idjmh@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8조의2(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10 - 163 호

옥외광고업체 직권말소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을 신고토록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옥외광고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우리시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02월 03일

- 다 음 -

1. 대상업체

연번	업 소 명	대 표 자	영업장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자	비고
1	거산광고공사	김 중 철	포항시 남구 대도동60-42	직권말소	2010.2.18	
2	삼우에드컴	이 재 희	포항시 남구 상도동 125-10	직권말소	2010.2.18	
3	일성미술사	신 승 국	포항시 북구 대흥동 594-2	직권말소	2010.2.18	



연번	업 소 명	대 표 자	영업장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자	비고
4	참 광고기획	최 우 호	포항시 북구 용흥동 622-4	직권말소	2010.2.18	
5	현수막 월드	우 성 윤	포항시 북구 죽도동 40-3	직권말소	2010.2.18	
6	고려상사	김 홍 갑	포항시 북구 죽도동 46-31	직권말소	2010.2.18	
7	고경미술사	김 원 욱	포항시 북구 죽도동 84-1	직권말소	2010.2.18	
8	성림에드컴	송 수 호	포항시 북구 죽도동 196-4	직권말소	2010.2.18	
9	디자인이유	김 일 섭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47-6	직권말소	2010.2.18	
10	엔시스	이 봉 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동55	직권말소	2010.2.18	
11	온누리	김 석 태	포항시 남구 해도동 170-43	직권말소	2010.2.18	

2. 공고기간 : 2010.02.03. ~ 2010. 02. 17.

3. 공고장소 : 포항시청 홈페이지·게시판 및 구청 및 읍면동 ·게시판

4. 위반사실 : 영업장 소재지에 영업장 없음.

5.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및 포항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1조

6. 의견제출

○ 기관명 : 포항시청

○ 부서명 : 테라노바팀 광고물담당(☎270-2363)

○ 의견제출 기한 : 2010.02. 03. ~ 2010. 02. 17.

7. 유의사항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예정된처분의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공고 제 2010- 167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공고

변경전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변경후 반출금지구역			행위제한 사항	위반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수 (본)		
연일읍 전 체	3,697	유강리	150	20 (달전, 증명 , 학전)	①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입목 및 원목의 이 동금지	1년 이하의 징역또는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자명리	230			
		학전리	460			
		달전리	520			
		중명리	595			
		택전리	340			
		중단리	235			
장기면 전 체	10,027h a	-	-	-		
홍해읍 전 체	10,628	남송리	390	99	②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 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금지  ④굴취된 소나무류 의 이동금지	
		대련리	1120			
		덕성리	730			
		덕장리	480			
		마산리	180			
		매산리	598			
		북송리	130			
		성곡리	470			
		양백리	360			
		옥성리	160			
		용곡리	170			
		용전리	260			
		이인리	610			
		초곡리	840			
		학천리	220			
		약성리	90			
		학성리	90			
남성리	220					
성내리	55					
중성리	115					
망천리	250					

포항시 공고 제 2010- 167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공고

변경전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변경후 반출금지구역			행위제한 사항	위반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수 (본)		
신광면 전 체	8,017	냉수리	788	78	①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입목 및 원목의 이 동금지	1년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
		만석리	311			
		사정리	369			
		상읍리	670			
		안덕리	617			
		우각리	570			
		죽성리	787			
		토성리	332			
		호 리	204			
		흥곡리	811			
청하면	-	고현리	1,027	-	②6개월이 경과되 지 않은 훈증 처 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기계면 전 체	9,193	기계면 전 체	9,193	35		
기북면 전 체	5,239	관천	389	9		
		대곡	570			
		용기	850			
		울산	530			
					④굴취된 소나무류 의 이동금지	

포항시 공고 제 2010- 167호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공고

변경전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변경후 반출금지구역			행위제한 사항	위반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수 (본)		
남 구	상대동	343	상대동	343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해도동	194	해도동	194		
	효곡동,	588	효곡동,	588		
	대이동,	494	대이동,	494		
	송도동	187	송도동	187		
북 구	중앙동	234	중앙동	234	1	
	양학동	198	양학동	198		
	죽도동	186	죽도동	186		
	용흥동	395	용흥동	395		
	우창동	620	우창동	620		
			장량동	1,12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해제) 공고합니다.

2010년 2 월 4 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10-21호

###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2월 04일

포항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포항시 남구 청장

소하천명	사 업 개 요									비고
	공사명	공사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목적	
		시점	종점	축제	호안	기타	착공	준공		
삼정천	구룡포읍 삼정천 정비공사	구룡포 삼정리 620	구룡포 삼정리 880	-	89.5m	212.5m	2010.02	2010.05	재해예방	편입사유 지3필지
구평천	구룡포읍 구평천 정비공사	구룡포 장길리 541	구룡포 장길리 806-1도	-	88.6m	52.2m	2010.02	2010.05	재해예방	편입사유 지 2필지
참샘천	장기면 참샘천 정비공사	장기면 정천리 산69	장기면 정천리 산69	-	70m	18m	2010.02	2010.05	재해예방	편입사유 지 1필지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편입토지 조서 포함)
2.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편 입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용 지 번호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읍,면	리,동	지 번					주 소	자	
1	장기	정권	산69	임	7,537	1	668	포항시 남구 대도동 163-24	이종분외9인	가압류
2	장기	정권	685	전	147,728	2	553	국유지	건설부	
3	장기	정권				3	68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26						26				
27						27				
28						28				
<b>합 계</b>					155,265		1,289			

포항시공고 제2010 - 176호

### 공 인 공 고

포항시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조 및 폐기 공인의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 2. 8

- 1. 등록공인 사용개시 및 폐기일 : 2010. 2. 12
- 2. 등록 및 폐기사유 : 인증기 교체로 인한 개각
- 3. 신조 공인명 및 인영

공인명	규 격	인 영	비 고
제적등초본등록증명서 포 항 시 남 구 청 장 인 발 급 용	한글전서체 2.1cm 정방형		인증기 신규

-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공인명	규 격	인 영	비 고
제적등초본등록증명서 포 항 시 남 구 청 장 인 발 급 용	한글전서체 2.1cm 정방형		인증기 교체로 폐기